

제 21 장 분쟁해결

제 1 절 분쟁해결

제 21.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1.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분쟁해결 규정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다. 또는
- 다.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한다.

제 21.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한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통상 협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어느 분쟁 해결절차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제1.3조(다자간 환경협정과 관계)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그 사안이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이후로는 오직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1.4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자동차상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을,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부속서 2-다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상품 무역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행된 협의를 통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5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부패성 제품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 또는 독점적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상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주선, 조정 및 중재

1. 양 당사국은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을 취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2.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수립된 절차는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연관된 절차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6 조 패널의 설치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를 이용함으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 가.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35일, 또는
 - 나. 제21.4조제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서면 통보 접수시 설치된다.

2. 제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을 적시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제 21.7 조 패널 구성

1. 이 절에서 “접수일”이란 한쪽 당사국의 제21.6조제1항에 언급된 패널 설치를 위한 서면통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날을 말한다.
2. 패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각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패널위원 1명을 임명하고, 패널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역할을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한 후보자를 4명까지 추천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자국의 패널위원 임명과 의장 역할을 수행할 추천된 후보자를 통보한다.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5. 양 당사국은 접수일 후 60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5 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의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이 기간 내에 양 당사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7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인 4 일 이내에,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의장이 선정된다.

6.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30 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 일 이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체자는 제 4 항에 따라 임명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양 당사국은 대체자 임명에 신속하게 합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전에 의장으로 추천된 나머지 후보자들 중에서 추첨에 의한 선정을 통하여 임명된다. 남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제 3 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추천하고, 의장은 그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그러한 경우,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에 시작하여 대체자가 선정된 날로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이 중단된다.

7. 각 패널위원은

- 가. 국제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 한다.
-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서도 고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마.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8. 패널위원이 제7항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속서 21-나에 규정된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를 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된다.

제 21.8 조 절차규칙

1.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은 부속서 21-다에 규정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른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보충적인 절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절차 규칙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나. 사호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그러한 정보가 패널에 제출된 후 언제라도 대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각 당사국이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라. 사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마.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하겠다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패널이 고려할 것

바. 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입장 및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사. 비밀정보¹의 보호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서면 통보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1.9조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

¹ 제22.2조(국가 안보) 및 제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규정된 대로, 패널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규정에서 확인되는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소 당사국이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5.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조치의 부정적 효과의 정도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정도에 대하여 패널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6.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패널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7. 패널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8. 제21.9조의 의미상의 패널의 조사·판정 및 권고는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패널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 절에 따른 패널 절차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21.9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패널은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조, 제 32조, 제 33조를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해석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패널에 제출된 정보와 기술적 자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3명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패널은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당사국의 이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나 침해가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패널 위임사항에 포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4.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판정의 기본적 근거를 포함한다.
5.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최초 보고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다.
6.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후,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가.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자신의 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는
 - 다.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7. 패널은 최초 보고서 제출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7 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8. 제 21.8 조 및 부속서 21-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최초 보고서는 비밀로 한다.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그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날부터 15 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공표될 수 있다.

제 21.10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제거하거나 부속서 21-가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양 당사국이 분쟁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를 제거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대신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제출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제 21.11 조 불이행-혜택의 정지

1. 제소 당사국의 보상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제21.10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보상이 제21.10조제3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되지 아니한 경우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로 30일,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이 경과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또는

나. 각 경우에 맞게, 가호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10일 이후에 그 정지를 이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경우,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부속서 21-가의 의미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제1항가호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제공한 서면통보의 수령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자동차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패널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패널이 그 설치일부터, 또는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대체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자동차의 경우 25일 이내에 단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예외로,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하여 채택되는 절차와 발행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른 패널 판정에 합치하는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기 위하여 철회 또는 수정된 때까지만,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때까지만 제소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 21.12 조 이행 검토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의 준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그 조치의 이 협정과 합의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서 그 사안을 분쟁해결 패널(이하 “이행패널”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접수되면 이행 패널이 설치된다.² 이행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그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적시하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 패널은, 가능한 한도에서,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원래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원래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이행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 및 발행된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제21.11조에 따라 혜택을 정지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절차 동안 그러한 혜택의 정지를 지속할 수 있다. 이행패널은 최종보고서에 그러한 정지가 종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된 혜택의 규모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1.13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절차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대응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² “존재 또는 ~와의 합치성” 과 “~의 준수를 위해 취하여진 조치” 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이행패널은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상의 관련 있는 법리를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1.14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21.15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도에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1-가 무효화 및 침해

1.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의미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

나. 제 9 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다. 제 14 장(정부조달)

이 장 제1절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 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에 따른 관련 법리를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제 22.1 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7 장(무역구제)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한도에서, 제 1 항 가호, 또는

나. 제 1 항 나호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제 22.6 조(문화 산업)에 따라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서 제 1 항 가호, 나호 및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나 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후보자**란 제21.7조에 따라 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 마.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그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은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만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5.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0.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한쪽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2. 패널위원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패널위원의 의무

15. 모든 전임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 유지

16.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련되거나 절차 동안 획득된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7. 패널위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다 모범 절차 규칙

적용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절차 규칙은 이 장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보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에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후보인은 제21.7조에 따라 패널 구성원으로서의 선정을 고려 중인 자연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1.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에 의하여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1.2조에 언급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조직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한쪽 당사국은 각 서면 입장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 및 각 패널위원에게 제공한다. 그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제출된다.

8.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국 또는 캐나다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의 개시

10.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라 패널위원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시부터 7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하거나 접촉한다.

11. 양 당사국은 합의된 패널 위임사항을 3 명의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2 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최초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3 명의 패널위원 임명 후 20 일 이내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 입장의 전달일 후 20 일 이내에 반박 서면 입장을 전달한다.

패널 절차의 수행

13.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조인이 그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6.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8. 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심리

19.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이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0.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실시되며, 첫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1.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2.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3.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문인만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4.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또는 발언을 할 사람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패널에 전달한다.

25.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26.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7.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8.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심리 후 가능한 조속히 양 당사국에게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29. 각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충적인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의

30.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패널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31. 한쪽 당사국은 패널 질의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에게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비밀 유지

32. 제25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 양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그 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패널에 제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또는 제출일 중 더 늦은 날 후 15일 이내에 그 입장서에 포함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33.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 또는 개인 패널위원과의 사소통하지 아니한다.

34. 제13항을 조건으로, 패널의 어떠한 구성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외부조언자의 서면 입장

35.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 입장은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고, 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36. 그 서면 입장은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한 그 제출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해야만 한다.

37. 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5항 및 제36항에 합치하는 모든 서면 입장을 판정에 목록화한다. 패널은 이러한 서면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

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5항 및 제36항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서면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긴급사건

38. 제2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번역 및 통역

39.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10항에 언급된 회합 보다 더 늦지 않게 양 당사국은 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0. 양 당사국이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신의 서면 입장을 다른 쪽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국은 구두 입장을 양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41. 패널 판정은 양 당사국이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2. 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43. 당사국은 제40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기한 계산

44. 제9항의 적용을 이유로, 당사국이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과 다른 날에 문서를 접수한 경우,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부터 기산된다.